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85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성준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지향, 박승진,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윤기섭,
이병윤,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정준호, 최기찬, 홍국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지역 자치단체의 교통 혁신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서울은 인구 밀집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대도시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임.
- 따라서 모빌리티 지원법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특성과 교통수요에 맞는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관련(안 제1조, 제2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시장의 책무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예산의 확보 및 개선계획 수립 · 시행을 규정하고자 함
- 다.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관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모빌리티 혁신 개선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해 현황조사 실시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방향을 규정하고자 함
- 라.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8조, 제9조) 모빌리티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마련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 제○호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 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	상위법 제3조 ¹⁾ 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제5조(현황조사)제1항	△	별도의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황조사 대상·범위·기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	상위법 제6조 ²⁾ 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상위법 제17조 ³⁾ 에 명시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 홍보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합리적 추계가 곤란함
제8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통상 비용 수반요인 ⁴⁾ 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제9조(지원)	×	상위법 제10조 ⁵⁾ 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본 의안은 상위법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에서 규정한

- 1) 모빌리티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모빌리티법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모빌리티법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5) 모빌리티법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로 발의한 것으로, 안 제5조(현황조사) 및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홍보에 일정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나, 실태조사의 경우 첨단산업 분야의 특성상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홍보 사업 또한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별도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홍보비용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서울시 관련 실국 관련부서 유사사업 예산내역을 제시함

(참고) 실태조사 비용 관련 참고자료(출처 : 2025년 서울시 예산서)

- 서울지역 디자인산업 실태조사(소관부서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 담당관) : 35,000천원
 - 연구원 인건비(20,000천원) + 디자인비, 인쇄비, 회의비 등 경비(15,000천원)

(참고) 전문인력 양성 비용 관련 참고자료(출처 : 2025년 서울시 예산서)

- 금융 전문인력 양성(소관부서 : 경제실 금융투자과) : 230,238천원
 - 전문대학원 성과평가(10,238천원) + 세미나 개최(50,000천원) + 펀테크 아카데미 운영(170,000천원)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소관부서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 담당관) : 147,600천원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147,600천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경우 대부분 용역으로 진행되며 용역비 일부로 홍보비가 포함되어 1식으로 산정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